"존중과 신뢰,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하는 북일교육"

북 일 고 등 학 교

http://www.bugil.hs.kr

북일고등학교 제21-37호	
담당부서	안전생활부
담 당 자	지 현
연 락 처	041-520-8616

FAX (041) 551-7116, (우) 31115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

가 정 통 신 문

(관 인 생 략)

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.

최근 SNS상에서의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. 걱정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,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.

1. **디지털 성폭력** :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**촬영, 저장, 유포, 협박, 전시, 판매, 시청, 소지**하는 등의 온라인 환경, 미디어, SNS등에서의 모든 폭력을 포괄한다.

2. **피해유형** : 불법촬영 / 성적괴롭힘 / 유포피해 / 딥페이크 /
/ 온라인성착취 / 협박피해 / 불안피해 /

3. **관련법률**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」

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음란한 부호, 문언, 음향,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 판매,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

② 제44조의 7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, 문언, 음향,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 판매,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「형법 제 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(명예훼손)」

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내 아이를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**자녀가 인지**할 수 있도록 **적극적으로 지도** 부탁드립니다.

2021년 4월 1일

북일고등학교장